

영등포구의회
제13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3. 31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조길형의원 외 11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3. 20.
- 제안자 : 조길형 (12인)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영등포구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,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소를 운영하고,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음(안제3조)
-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(안제4조)
-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, 이 외의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(안제5조)
-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,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비용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 함(안제6조)

■ 관련법규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, 제18조, 제66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없 음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,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**안 제3조에는** 구청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소를 운영하고,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,
- **안 제4조에는**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,
- **안 제5조에**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, 이 외의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,
- **안 제6조에**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,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비용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●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,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,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,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※ 참고로 2008년 3월 현재 우리구 장애인은 1,462명으로, 수급자는 292명, 일반장애인이 1,1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3. 31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법령

관 련 법 령

■ 장애인복지법

제9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의료와 재활치료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6조 (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·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.

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,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·대여·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